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 다른 학생연구자 등 누구든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5.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2025. 3. 6., 일부개정]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3-4-17-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 6. 23.)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에 대한 제재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년
-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은 환수
-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의 사유에 해당 가능

○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https://youtu.be/7u3oDi5YfGo>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연구자 및 기관 제재가 엄중하므로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